

부속서 3-나

특정상품의 취급

1. 원산지 부여

- 가. 수출을 위하여 재수입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제3.7조에 규정된 공정 이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품으로 재수입되고, 제7항에 언급된 목록과 이후의 개정에 반영된 제3.5조에 언급된 “특정 물품”은 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다만, 비원산지 투입의 총 가치¹¹는 원산지 지위를 신청하는 최종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이 부속서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의 관련 규정은 제3.5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원산지 부여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2. 제3.5조의 이행을 위한 특별 절차

- 가. 제3.5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이 장의 제2절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¹²에 의하여 발급된다.
- 나.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은 그 상품에 제3.5조가 적용됨을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한다.
- 다. 이 부속서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 제2절의 관련 조는 제3.5조가 적용되는 상품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 라. 한국은 이 장 제2절의 관련 조에 따라 베트남 관세 당국이 제3.5조의 적용을 받는 상품에 대하여 검증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3.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

- 가. 한쪽 당사국이 제3.5조가 적용되는 상품이 그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양과 그러한 조건 하에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의 증가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국내 산업에 대한 그러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기간 동안 그러한 상품에 대한 제3.5조의 적용을 자유로이 정지한다.
- 나. 가호에 따라 제3.5조의 적용을 정지하고자 하는 한쪽 당사국은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2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고 제안된 정지와

¹¹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란 운송비를 포함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역외에서 추가된 모든 재료 및 누적된 그 밖의 비용뿐만 아니라 역내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¹² 한국의 경우, 이 부속서의 목적상, “발급 당국”은 한국의 관세 당국을 말한다.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부여한다.

- 다. 가호에 언급된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정지 조치를 한 당사국이 그 정지가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어야 한다.
- 라.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가호에 따른 제3.5조의 적용의 정지는 다른 쪽 당사국에 2개월 사전통보 없이 잠정적으로 취해질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정지가 발효되기 전에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 마. 당사국이 가호에 언급된 결정을 내리고 나호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된 경우, 그 관련 당사국은 제3.5조의 적용을 다음을 포함하여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 1) 심각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의무가 없다.
 - 2) 사전 협의에 대한 의무가 없다.
 - 3) 정지의 기간 또는 빈도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리고
 - 4) 보상의 의무가 없다.

4. 연례 검토

- 가. 양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에서 제3.5조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 1) 수출 당사국은 전년도 일년 동안 수입 당사국에 대한 제7항에 나열된 각 상품의 수출 통계를 포함하여, 제3.5조의 운영에 대한 간략한 사실보고서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리고,
 - 2) 수입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락되지 않은 원산지 증명서의 건수 및 거부 이유를 포함하여, 특혜관세대우 신청에 대한 거부가 있다면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출한다.
- 나. 공동위원회는 제3.5조의 이행과 운영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추가 정보를 수출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 다. 공동위원회는 가호에 규정된 검토의 결과를 고려하여 동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5. 분쟁해결

이 부속서의 해석, 이행 또는 적용과 관련한 어떠한 분쟁도 제15장(분쟁해결)에 규정된 절차와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6. 이 협정의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제7.1조(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를 포함하여 이 협정하의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상품 목록

다음은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 목록이다. 한쪽 당사국은 이 항에 언급된 목록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쪽 당사국은 이를 신의성실에 따라 고려한다. 그러한 개정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 채택된다.

번호	소호 (2012)	품목명 (소호)
1	121221	식용
2	321310	세트상의 회구류
3	340700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로 알려진 조제품[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또는 판 모양·말굽모양·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틱(plaster)(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4	350610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391740	연결구류
6	392310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7	39232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392350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9	392690	기타
10	401699	기타
11	420229	기타
12	481940	그 밖의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13	520839	그 밖의 직물
14	55093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15	560811	제품으로 된 어망
16	580421	인조섬유로 만든 것
17	581092	인조섬유로 만든 것
18	6102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9	6102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0	610711	면으로 만든 것
21	610791	면으로 만든 것
22	610821	면으로 만든 것

번호	소호 (2012)	품목명 (소호)
23	6108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4	610891	면으로 만든 것
25	610910	면으로 만든 것
26	6109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7	611011	양모로 만든 것
28	611120	면으로 만든 것
29	611130	합성섬유의 것
30	611522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31	6115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32	611594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33	611595	면으로 만든 것
34	611596	합성섬유로 만든 것
35	6115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36	620113	인조섬유로 만든 것
37	6201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38	620193	인조섬유로 만든 것
39	62021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40	620213	인조섬유로 만든 것
41	620293	인조섬유로 만든 것
42	620312	합성섬유로 만든 것
43	6203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44	62033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45	620333	합성섬유의 것
46	62034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47	620342	면으로 만든 것
48	6203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49	620433	합성섬유로 만든 것
50	6204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51	620453	합성섬유로 만든 것
52	620462	면으로 만든 것
53	620463	합성섬유로 만든 것
54	620520	면으로 만든 것
55	6205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56	620640	인조섬유로 만든 것
57	6206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8	620711	면으로 만든 것
59	6207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0	6207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번호	소호 (2012)	품목명 (소호)
61	620892	인조섬유로 만든 것
62	621143	인조섬유로 만든 것
63	621600	장갑류
64	630231	면으로 만든 것
65	630493	합성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66	630532	중간 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67	630533	기타[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스트립(strip)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8	630612	합성섬유로 만든 것
69	630790	기타
70	650700	모자용 헤드밴드·내장재·커버·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모자의 프레임(frame)·챙 및 턱끈
71	691200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
72	691490	기타
73	732393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74	761699	기타
75	841330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
76	842123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
77	848490	기타
78	850110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9	850300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0	851240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 및 제무기(demister)
81	851290	부분품
82	851610	전기식의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83	851660	그 밖의 오븐, 쿠키·조리판·보일링링·그릴러 및 로스터
84	851690	부분품
85	851770	부분품
86	852990	기타
87	853669	기타
88	853670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 또는 케이블용 커넥터
89	853890	기타
90	853990	부분품
91	854430	전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 또는 선박용으로 한정한다)
92	854442	접속자가 부착된 것
93	870892	소음기(머플러) 및 배기관, 그 부분품

번호	소호 (2012)	품목명 (소호)
94	870894	운전대·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과 운전박스, 그 부분품
95	870899	기타
96	940510	샹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 또는 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장소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은 제외한다)
97	940592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98	940599	기타
99	960820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100	960910	연필과 크레용(견고한 집 속에 심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